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7

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장제원·홍문표·정동만

추경호 • 이철규 • 김석기

박덕흠 • 윤창현 • 지성호

조태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 무가 있음.

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

이에 시·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·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·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음 ·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음 · 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·도지사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·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·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공장 소음・진동배출허용	제7조(공장 소음・진동배출허용
기준) ①・② (생 략)	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시・도지사는 「환경정책기
	본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
	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
	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
	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
	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
	<u>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
	<u>배출허용기준을 설정·변경하</u>
	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
	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
	<u>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시・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
	<u>배출허용기준을 설정·변경하</u>
	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
	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
	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
	를 하여야 한다.